

【붙임 (한글)】

**취업 외 목적,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소지자
안내 및 유의사항**

1. 인적사항

국적		성명 (여권 상 성명)	
외국인등록번호	-	체류만료일	
주소지			
국내 체류목적			

2. 상기 본인은 다시 체류기간연장 신청하면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고지 받았습니다.

또한, 향후 방문취업(H-2)체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, 체류기간연장 불허 그리고 출국 후 6개월간 방문취업(H-2) 비자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.

년 월 일

서약인 : 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【 방문취업자격으로 취업할 경우 유의사항】

-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의2 '29'에 따른 39개 단순노무 업종*에만 취업 가능 (허용되는 업종 외에는 취업 불가)
*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은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서 확인 가능
- 방문취업(H-2)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·기관·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및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·기관·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사실을 반드시 해당 지방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에 신고하여야 함